

# 鐵鋼工業育成을 위한 諸般法令의 補完을 建議한다

黃 善 益\*

韓國科學技術研究所 研究員

## 目 頁

1. 序 言
2. 鐵鋼工業育成을 위한 諸般法令의 内容
3. 上記 諸般法令에 대한 檢討
4. 鐵鋼工業育成을 위한 補完事項
5. 結 言
6. 參考文獻

## 1. 序 言

第三次 經濟開發 五個年計劃이 指向하고 있는 가장 重要한 事業中의 하나는 工業構造의 高度化이다. 이 目標達成과 金屬工業은 不可分의 關係가 있다. 金屬工業中에도 특히 鐵鋼材料를 다루는 鐵鋼工業은 國力의 尺度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重要하다. 鐵鋼工業은 產業 各分野에 必要不可缺한 生產材 및 消費材를 供給하는 基幹產業으로서 機械工業, 建設業, 金屬鑄業等 他產業에의 關聯效果가 가장 大한 產業이다. 一國의 經濟發展 또는 工業發展度가 鐵鋼材의 消費指數에 의하여 測定될 정도로 產業上 重要한 位置에 있으며, 實際로 世界主要强大國의 鐵鋼生產高의 順位와 一般的으로 評價되는 國力順位와는 大同小異하다.

鐵鋼工業은 工業構造의 高度化의 核心이라 할 수 있는 重化學工業의 中추적 供給源이라 하겠다. 造船工業, 自動車工業 및 化學機器工業과 같은 需要產業이나, 또는 原子力工業, 超大型교량設置나 宇宙海洋開發等과 같은 新分野의 產業과 鐵鋼材料는 質과 量의 兩面에서相互間에 더

우 切實한 유대관계가 要求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지금까지의 많은 研究報告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鐵鋼工業이 갖고있는 問題點은 ① 鐵銅一貫作業體系의 缺如, ② 施設規模의 雾細性, ③ 製銑, 製鋼, 壓延部門別 施設의 不足과 各 施設能力間의 不均衡 및 ④ 施設의 老朽化等으로 要約된다. 이와 같은 問題點을 안고 있는 韓國鐵鋼工業의 育成을 위하여 政府는 과거 “綜合製鐵事業計劃研究委員會”가 提出한 報告書를 바탕하여 現在 進行中에 있는 浦項綜合製鐵株式會社의 建設을 서두르게 되었고, 또한 1970年 1月 1日에는 “鐵鋼工業育成法”(法律 第2181號)과 “鐵鋼工業에 대한 減免”(法律 第2151號)의 公布 및 1970年 10月 20일에는 “철강공업육성법시행령”(大統令第5366號)의 公布와 같은 諸般法令을 制定하기에 이르렀다.

우리 나라의 鐵鋼工業은 어느나라보다도 基幹產業과 戰略產業으로서 核心的 役割을 하여야 하는 것이 現實이므로 可能한 限의 모든 法的保護下에서 적극적으로 育成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같은 現實下에서 특히 우리의 格別한 關心을 끄는 것은 世界第二次大戰後 日本의 鐵鋼工業이 民營化된 다음에도 日本政府가 積極의 一連의 措置를 取하므로서 世界 第三位의 鐵鋼生產國으로 進出하여, 結果的으로 거의 완전파괴 상태下에서 最短期間內에 經濟的으로 世界 第二位의 超强大國으로 成長하게끔 하는 派動力이 되었다는 事實이다. 日本이 1951年부터 1965年에 이르기까지 15年동안에 第1, 第2 및 第3次 產業合理化計劃을 추진할當時의 技術水準과

\* 技術士；金屬部門

오늘날 우리나라의 技術水準을 서로 比較할 때 우리 는 日本의 경우보다 더 적극적인 法的保護下에서 均衡된 一貫施設의 現代化를 圖謀하고 最新 技術의 生着化를 期하여 技術水準을 向上시켜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각種產業의 基幹인 鐵鋼工業의 育成을 위한 上記 諸般法令이 今後 施行되어짐에 따라 점차로 補完되면서 많은 效果를 거둘것이 期待되나 이에 補完을 要하는 것으로 밝혀진 部分은 施行初期부터 斷行되는 것이 보다 效果的이므로 몇 가지 補完事項을 위한 建議를 하고자 한다.

## 2. 鐵鋼工業育成을 위한 諸般法令의 內容

政府가 公布한 鐵鋼工業育成에 關한 法令들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가. 鐵鋼工業育成法(法律 第2181號)

全文 20條로 그 內容을 살펴보면; 目的, 適用範圍, 施設基準, 鐵鋼工業者의 指定, 事業의 開始, 施設의 變更, 政府支援, 原料機資材의 供給, 公共料金의 割引, 原料供給者에 대한 支援, 原料의 輸入, 資金造成, 監督, 研究 및 技術訓練機關, 調査 및 報告, 指定의 取消, 鐵鋼工業審議會, 訴則, 過怠料, 施行令等으로 廣範圍하게 規定을 設定하였다.

本 鐵鋼工業育成은 上記 諸般規定中施設基準(第3條), 鐵鋼業者の 指定(第4條), 政府支援(第7條), 原料機資材의 供給(第8條) 및 資金造成(第12條)에 尤其 力點을 두고있다.

### 나. 鐵鋼工業育成法施行令(대통령령 第5366號)

鐵鋼工業育成法中 施行令(第20條)의 必要事項을 大綱領令으로 정한 것이다.

全文 13條로 된 그의 內容을 살펴보면; 目的, 施設場所에 施設, 施設能力, 鐵鋼工業者의 指定, 事業의 開始, 施設의 變更, 原料 및 機資材支援, 公共料金의 割引, 鐵鋼石 供給者에 대한 支援, 鐵鋼石의 購入 및 輸送契約承認, 監督, 研究 및 技術訓練機關, 調査 및 報告等이다.

本 鐵鋼工業育成法施行令은 上記 諸般規定中

특히 施設能力(第3條), 鐵鋼工業者의 指定(第4條), 施設의 變更(第6條), 原料 및 機資材支援(第7條), 公共料金의 割引(第8條), 鐵鋼石의 購入과 調査 및 報告(第13條)에 力點을 두고 있다.

### 다. 租稅減免規制法中 改正法律(第2151號)

우리나라의 租稅減免規制法은 改正法律까지 포함하여 全文 15條로 되어있다. 이중 鐵鋼工業育成에 關聯된 事項은 第4條의 1項과 2項에 局限되어 있다. 第4條는 法人稅와 営業稅의 免除에 關한 것이다.

## 3. 上記 諸般法令에 대한 檢討

鐵鋼工業을 적극적으로 育成하기 위하여는 뚜렷한 育成原則이 確立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舉論되어 온 具體的인 育成原則과 育成原則上の 基本問題를 綜合하면 다음과 같다.

### 가. 鐵鋼工業의 育成原則

- 1) 國內需要의 自給能力 確立
- 2) 施設構造 不均衡의 是正
- 3) 施設規模 霧細性의 脫皮
- 4) 一貫施設의 增強
- 5) 施設의 現代化
- 6) 既存 中小規模工場의 系列化 指導

### 나. 鐵鋼工業育成原則上의 基本問題

- 1) 支援施設 投資面에서의 支援
- 2) 內資, 外資, 減價償却法等 施設資金面에서의 支援
- 3) 原料調達 및 施設機材의 免稅 導入等 運營面에서의 支援
- 4) 稅制面에서의 保護
- 5) 技術上의 適應性 檢討
- 6) 市場性 및 國際競爭性上에서의 役割과 能力檢討

### 다. 法令에 對한 檢討

上記 鐵鋼工業育成法과 同施行令 및 租稅減免規制法을 綜合的으로 檢討하면 위에서 言及된

育成原則中 施設規模寡細性의 脫皮, 一貫施設의 增強, 施設의 現代化等에 관하여 비록 先進外國과는 比較할 수 없을 정도로 消極的인기는 하지만 廣範圍하게 다루었고, 또한 育成原則上의 基本問題中에서는 支援施設投資面에서의 支援, 施設資金面에서의 支援, 運營面에서의 支援, 稅制面에서의 保護, 技術上의 適應性 檢討等에 關한 事項들을 集約하였다고 볼수있다.

鐵鋼工業의 育成策은 國家에 따라 差異가 있기는 하지만 大體의으로 鐵鋼工業의 國有 또는 國營, 建設費의 補助, 一定期間의 免稅 및 保護關稅等을 들수 있다. 또한 企業의 集中, 業務提携, 販賣, 카르테르 形成, 政府와 業者間의 協力等 鐵鋼業의 再編成을 通하여 ① 生產品種의 專門化 및 集中化, ② 施設의 共同利用, ③ 半製品 및 製品의 輸送距離 短縮, ④ 低生產施設의 폐기, ⑤ 價格引下 等을 果敢하게 期하고 있다. 世界 第2次大戰 前後를 통하여 미국, 서독, 불란서, 이태리 等의 先進國에서는 基礎產業으로서의 鐵鋼業의 再編成을 끝냈으며 英國에서는 國有化를 斷行하였고, 日本에서는 富士와 八幡의 2大 鐵鋼會社가 合併되어 新日本製鐵株式會社가 發足하였음은 我们가 이미 잘 아는 事實이다.

우리나라의 鐵鋼工業을 國營化시키느냐 또는 民營化시키느냐의 運營上의 問題는 別途로 치드라도 어느 경우를 莫論하고 政府의 積極的인 保護育成의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또한 現在 建設中인 沙項綜合製鐵株式會社를 中心으로 한 既存鐵鋼會社들의 再編成 대지는 擴張, 또는 系列化等이 本格의으로 推進되어야 하겠다.

우리一次의으로 이미 公布된 上記 韓國鐵鋼工業育成을 위한 諸般法令中 政府의 보다 積極的인 保護育成의 配慮가 必要한 补完事項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指摘할 수 있겠다.

- 1) 鐵鋼工業審議機關의 強化
- 2) 技術開發에의 強力한 後援
- 3) 運營面에서의 보다 強力한 保護
- 4) 稅制面에서의 保護

#### 4. 鐵鋼工業育成을 위한 补完事項

우리나라의 鐵鋼工業育成을 위한 諸般 法令에 대한 上記 檢討에서 지적한 补完事項을 이지 項目별로 考察하면 다음과 같다.

##### 자. 鐵鋼工業審議機關의 強化

鐵鋼工業育成法(法律 第2181號) 第17條는 鐵鋼工業審議會에 관한 것으로서 그 全文은 다음과 같다. “鐵鋼工業에 관한 商工部長官의 諮問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鐵鋼工業審議會를 둘 수 있다.” 그런데 大統領令 第5366號로 되어 있는 鐵鋼工業育成法施行令에는 鐵鋼工業審議會 設置에 대하여 言及되어 있지 않다.

韓國鐵鋼工業育成에 관한 政府의 主務機關은 현재 商工部이며, 기타 관련기관은 科學技術處와 經濟企劃院 等이다. 鐵鋼工業育成의 必要性은 오래전부터 認定되어 왔으나 本格的인 認識은 1968年 이후라 하겠다. 이제 “工業構造의 高度化”가 第3次 經濟開發 5個年計劃의 가장 重要한 事業中의 하나로서 設定된 此際에 政府機構內에 보다 格이 높은 鐵鋼工業審議關係常設機關을 設置한必要가 있는 것이다. 商工部內에 金屬課가 있어서 金屬工業이 일환으로 鐵鋼工業을 다루고 있으나 보다 格이 높은, 例를 들어 鐵鋼課, 또는 鐵鋼局을 新設하는 것을 진지하게 檢討한 時期가 到來하였다. 原子力研究所, 原子力廳이 이미 오래전에 發足되었고, 장차 原子力廳의 改編으로 科學技術處內에 原子力局이 新設될點을 감안할때, 現代產業에 있어서 鐵鋼工業은 原子力工業에 끗지 않은 重要한 位置를 차지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原子力工業의 前段階產業임을 考慮하여 商工部나 科學技術處에 鐵鋼局이 新設될수도 있다. (鐵鋼工業과 原子力工業과의 關係를 간단히 한 實例를 들어서 說明한다면, 世界的으로 이미 實用化되고 있는 原子力發電所와 原子力船舶 等이나 現在 檢討되고 있는 海水淡化裝置 및 原子力製鐵의 計劃等과 같은 原子力의 利用分野가 擴大됨에 따라서 原子爐를 비롯한 關聯機器에 必要한 鐵鋼材料의 材質向上이 提起되고 있다. 한 例를 듣다면, 原子爐 壓力容器는 化學工業의 경우와 같이 두께가 큰 鐵鋼材料가 要求되고 있는데 이에는 中性子의 照

射危化에 견딜 수 있는 性質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다.)

一次的으로 鐵鋼工業審議會를 常設機關으로 하여 商工部長官 直屬下에 두는 것을 原則으로 하나 科學技術處, 經濟企劃院 等 關係機關과 密接한 유대가 있도록 하고 必要에 따라서는 국무총리 또는 대통령 直屬下에서 諮問에 應하도록 하여야 한다.

鐵鋼工業審議會의 常設化 및 鐵鋼局의 新設主張의 또 다른 重要한 理由는 우리나라 鐵鋼工業에 關係되는 各種 統計資料의 整理에도 있다. 關係機關, 各研究所, 各銀行, 各協會等에서 發表되는 統計資料의 大部分이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正確性을 期하지 못하고 있다. 鐵鋼工業育成原則과 育成原則上의 基本問題들은 正確한 統計資料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 나. 技術開發에의 強力한 後援

鐵鋼工業育成法의 第14條는 研究 및 技術訓練機關 設置에 관한 것으로서 그 全文은 다음과 같다. “① 第7條의 規定에 의한 鐵鋼工業者는 鐵鋼工業의 技術開發을 위하여 必要한 研究 및 技術訓練機關을 두어야 한다. ② 政府는豫算의範圍안에서 前項의 規定에 의한 研究 및 技術訓練機關의 所要經費의 一部 또는 全部를 補助할 수 있다.” 鐵鋼工業育成法施行令의 第12條의 全文은 다음과 같다. “法 第7條에 規定된 鐵鋼工業者는 法 第14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設置된 研究 및 技術訓練機關의 人員과 施設의 規模 및 内容을 商工部長官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一般的으로 우리나라와 같은 發展途上國家에 있어서 鐵鋼工業을 短期間內에 育成하려면 諸般法의 保護下에서 先進外國의 最新技術을 積極導入하고 基礎研究, 應用研究, Pilot Plant 試驗, 實際의 生產技術, 經濟性 檢討 等을 通하여 導入된 技術을 土着化시켜야 한다. 具體的인 實例로 生產담당技術者와 企劃담당技術者間에 技術核心의 問題파악에 있어서의 見解差異, 政府關係機關의 技術담당陣과 一般生產業體 技術陣間에 있을 수 있는 鐵鋼工業育成方案確立의 엇갈림, 技術者와 技能者間의 技術問題 解決上의 不均衡 노우·와이 (Know-Why)와 노우·하우 (Know-

how) 사이의 矛盾한 간격等은 우리나라가 時急히 해결해야 할 事項이다. 10餘年前의 日本과 같이 우리나라가 政策的으로 鐵鋼工業을 強力히 育成한다 하더라도 上記와 같은 技術開發上の根本的 問題를 解決하지 않고서는 真正한 意味에서의 後進性을 脫皮할 수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既存 綜合研究所들의 담당研究 分野中 보다 大部分을 鐵鋼工業技術開發에 割愛토록 함은 勿論 必要에 따라서는 鐵鋼工業研究所를 新設할 수도 있도록 하고, 各 鐵鋼工業者가 設置하는 研究 및 技術訓練機關은 최소한 韓國科學技術研究所나 農漁村開發公社와 같은 特典을 받도록하고, 浦項綜合製鐵株式會社에 新設豫定인 研究機關은 綜合製鐵工場뿐만 아니라 國內의 모든 鐵鋼會社들이 共同利用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나라에서는 各種產業에 關連되는 研究報告가 學校, 學會, 研究所의 獨點상태에 있다. 특히 鐵鋼工業에 關한 研究發表는 產業界는 거의 소외된 상태에서 學校나 研究機關같은 學界의 專有物이 되어 있다. 이같은 현상은 生產에 직접 종사하는 操業담당技術者들自身의 時間의 여유나 能力과 關連되는 것이기는 하나, 보다 큰 理由는 所謂 “產業機密維持”라는 名目下에 各鐵鋼會社들이 閉鎖的인 運營을 하고 있는 때문이다. 產業機密에 屬하는 事項은 部分的 性格을 띠우고 있지 全體의 일수는 없다. 一流學者들과 博士나 穩士學位의 高級技術者와 科學者들이 生產現場에서 동분서주하는 先進國들의 例가 우리에게는 아쉽다. 不幸히도 우리나라에는 例外가 없는 것은 아니나 大部分의 경우, 現場技術者는 계속 現場生活을, 技術行政담당技術者는 계속 技術行政을, 研究담당技術者는 계속 研究 담당을 하여 相互間에 技術核心의 問題파악에 있어서 상당한 간격을 이루고 있다. 一貫된 分野에서의 계속從事는 原則적으로 바람직한 일이나, 工業育成이라는 大局의 見地와 人事管理面에서 運營의 妙를 살려서 學界, 產業界, 政府간에 적절한 技術人士交流의 風土가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란다.

一定한 設置規程以上의 研究機關을 確保한 鐵鋼會社들에 대하여는 特別한 對外秘를 除外하고

는各種研究結果와操業경험을意欲의으로發表할수있도록會誌나技報發行에적극적인뒷받침이있어야한다.또한이러한鐵鋼會社들에從事하는技術者들에대하여는一般公共研究機關의技術職員들이받는社會的대우와特惠를同一하게받을수있도록하여야한다.(一例를들어서,海外留學手續의경우에試驗課目的면제나特惠에있어서生產業體出身技術者들은많은不利한條件에있다)鐵鋼工業分野에있어서一般生產業體에서技術開發關係學術誌를發刊한例如는現仁川製鐵株式會社의前身인仁川重工業株式會社가過去1960年代初期에二回에걸쳐“仁川重工業技報”的發行뿐이었던것으로나타나있다.

以上과같은技術開發에의強力한後援은鐵鋼工業審議會나假稱鐵鋼局같은常設機關에서施行細則을制定도록하여現法令의研究機關의設置原則이나報告接受原則을補完도록해야한다.

#### 다.運營面에서의 보다強力한保護

鐵鋼工業育成法의第7條,第8條,第9條및第10條는支援施設投資,原料調達,公共料金割引等의關聯된事項인데原則上으로만設定되어있지,實際의租稅減免規制法中第11條(物品稅의免除),第12條(關稅의免除)및第13條(所得計算의特例)에는반영되어있지않다.따라서이를檢討하여全面 또는部分적으로라도物品稅및關稅上의減免條項에반영시켜야한다.

#### 라.稅制面에서의保護

鐵鋼工業은租稅減免規制法中第4條에의하여法人稅와營業稅만免除되도록되어있다.

租稅減免規制法中租稅의減免으로서는法人稅와營業稅만아니라,上記運營面에서言及된物品稅및關稅,其他所得稅,相續稅,登錄稅等이포함되어있다.이제까지韓國의一流財閥들이그들의事業을어느分野에서이끌어왔는가하는現實을考慮해서라도全文15條로되어있는租稅減免規制法의어느條項이나鐵鋼工業育成에關한事項이全面的 또는部分적으로라도반영되지않으면안된다.

## 5.結言

우리나라의鐵鋼工業이良質廉價의鐵鋼材를國內에充分히供給하고나아가서輸出을위한國際競爭力を保持하려면우선技術,設備의近代化를통한量產體制의確立이先行되어야한다.이를위하여서는以上과같은機構面,技術面,財政面,運營面等에서의國家의強力한支授 및保護가隨伴되지않으면안된다.

이중에서특히技術面에서의支授과保護는시급한것이다.지금까지鐵鋼工業分野에있어서기술의導入,開發,向上이없었던것은아니나,一方의in 노우·와이(Konw-Why)나또는一方의in 노우·하우(Know-how)에局限된감이없지않다.노우·와이가노우·하우에直結되는技術總和의實際的研究가鐵鋼工業의產業構造面에서體系적으로이루어지지않으면안된다.지금까지蓄積되어온研究結果와實際의生產과操業 경험들을총망라해서再檢討하여未決事項을補完하는한편先進諸國의國際動向에 敏感해야할것이다.

材料開發分野,특히鐵鋼材料分野에서落後된우리나라는先進國이이미경험하였던많은“試行錯誤”는피하면서새로운氣風下의運營과management體制下에서의研究와生產이서로調和를이루는명실상부한產學一體를도모하여야한것이다.그렇지않으면量的으로는많은工場이建設되어稼動되면서도眞正한意味에서의經濟成長과技術의開發및革新을目標대로達成하기힘들것이다.金屬工業,특히鐵鋼工業은우리나라에서가장落後된產業의하나로서各種機械工業發展에큰장애가되고있다.

## 6.參考文獻

- ① 鐵鋼工業育成法(法律第2181號)
- ② 鐵鋼工業育成法施行令(大統領令第5366號)
- ③ 租稅減免規制法(法律第1723號)
- ④ 租稅減免規制法中改正法律(法律第1974號,第2053號)
- ⑤ 外資導入法(法律第1802號)(16頁에계속)